

사망사고 감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단 지원사업 소개



사망사고 감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1. 안전보건공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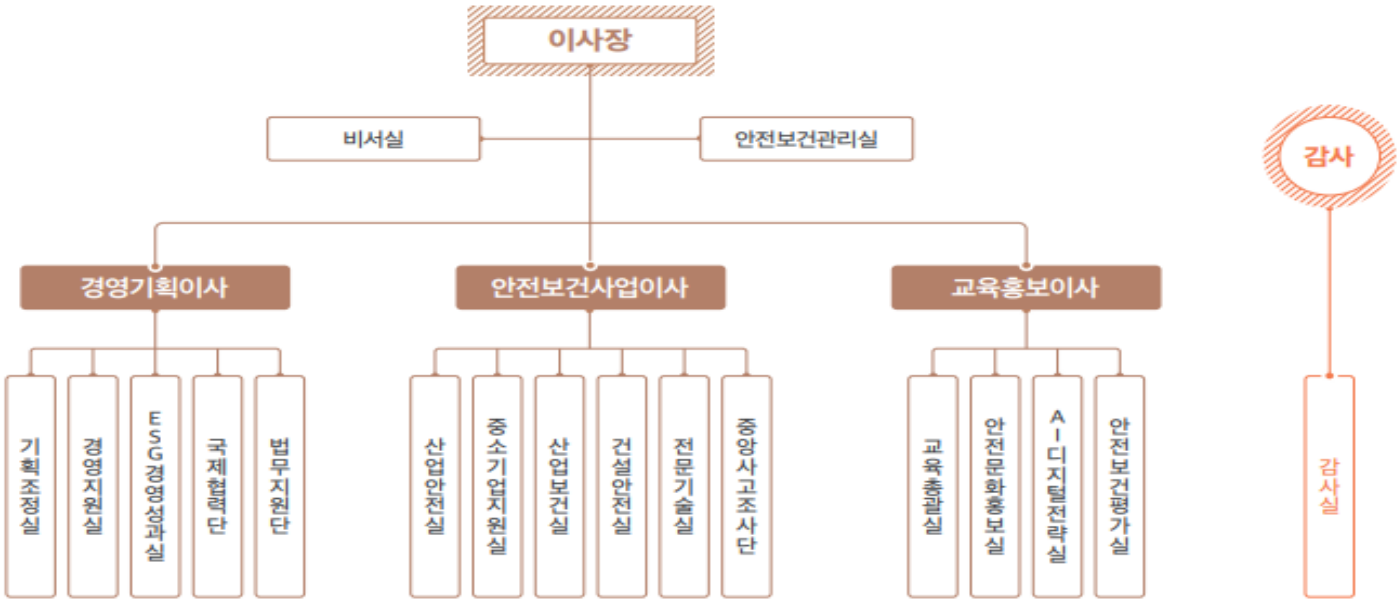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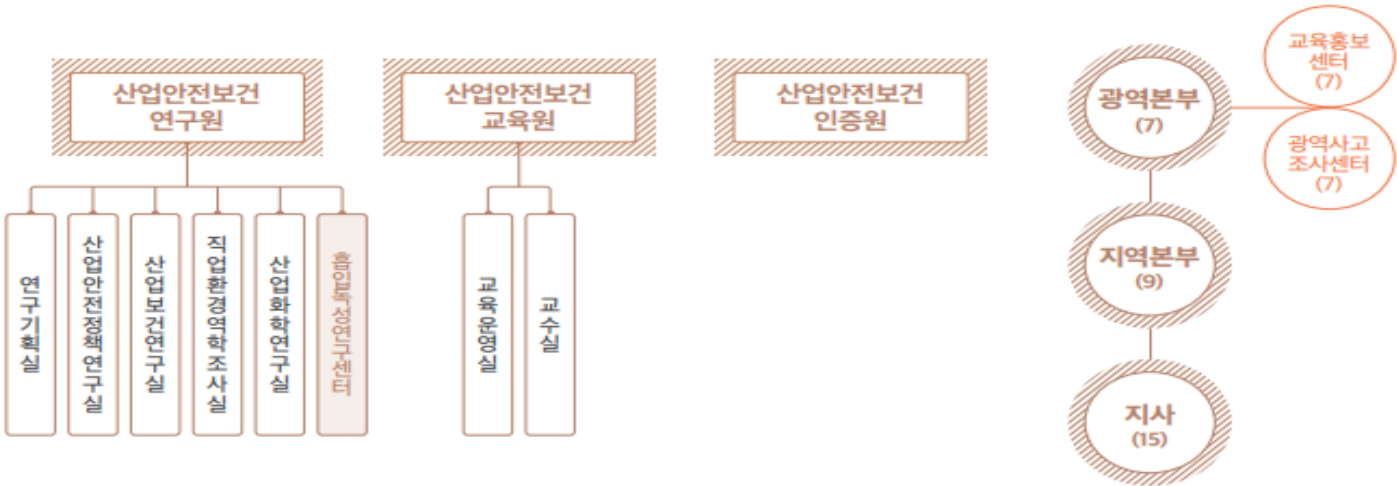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



본부 : 30이사, 14실, 3단(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산하기관 :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광역본부(7), 지역본부(9), 지사(15개소)



노사가 신뢰하는 **‘K-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세계 최고 산업안전보건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데 앞장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

우리나라 안전보건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진화했습니다.
창립 이후 우리 공단은 안전보건의 토대를 만들고,
안전보건 전문기관에서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까지
오직 안전보건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 1991 유해위험 기계·기구 검사업무 개시
- 1992 방곡민 무재해 천만 명 서명운동
- 1993 제1회 산업안전보건대상 시상식
- 1995 안전보건연구원 준공
- 1996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 1997 산업화학물질연구센터 준공
- 1998 제14차 아·태 산업안전보건기구 서울총회 개최

방향을 잡다

1990 - 1999

도약기



- 1987 한국산업안전공단 창립
- 198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개원

첫발을 내딛다

1987 - 1989

기반 구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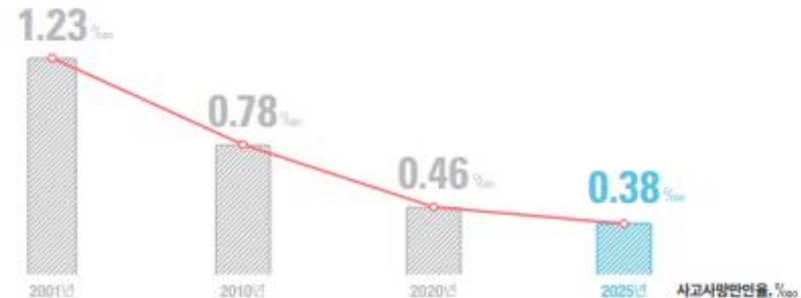


- 2001 콜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시작
- 2004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준공
- 2007 공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 2008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서울신문 채택
- 200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명칭 변경 (안전보건공단 약칭 사용)

한 걸음 나아가다

2000 - 2009

선진화 진입 및 성장 발전기



- 2010 서비스업재해예방을 신설
- 2014 울산 신청사 개청
- 2015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A등급 달성
- 2016 교육원 중부교육장 개관
- 2017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개원 / 중앙사고조사단 신설
- 2021 서울동부지사, 고양파주지사, 충북북부지사 신설
-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 도입
- 2024 경기남부지사 신설
- 2025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 2026 경기광역본부로 명칭 변경(지역본부 → 광역본부)

새로운 길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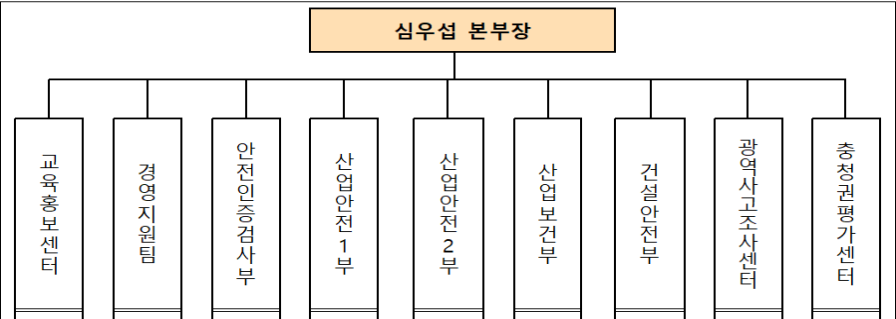
2010 - 2026

제2도약기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60



[조직] 3센터 5부 1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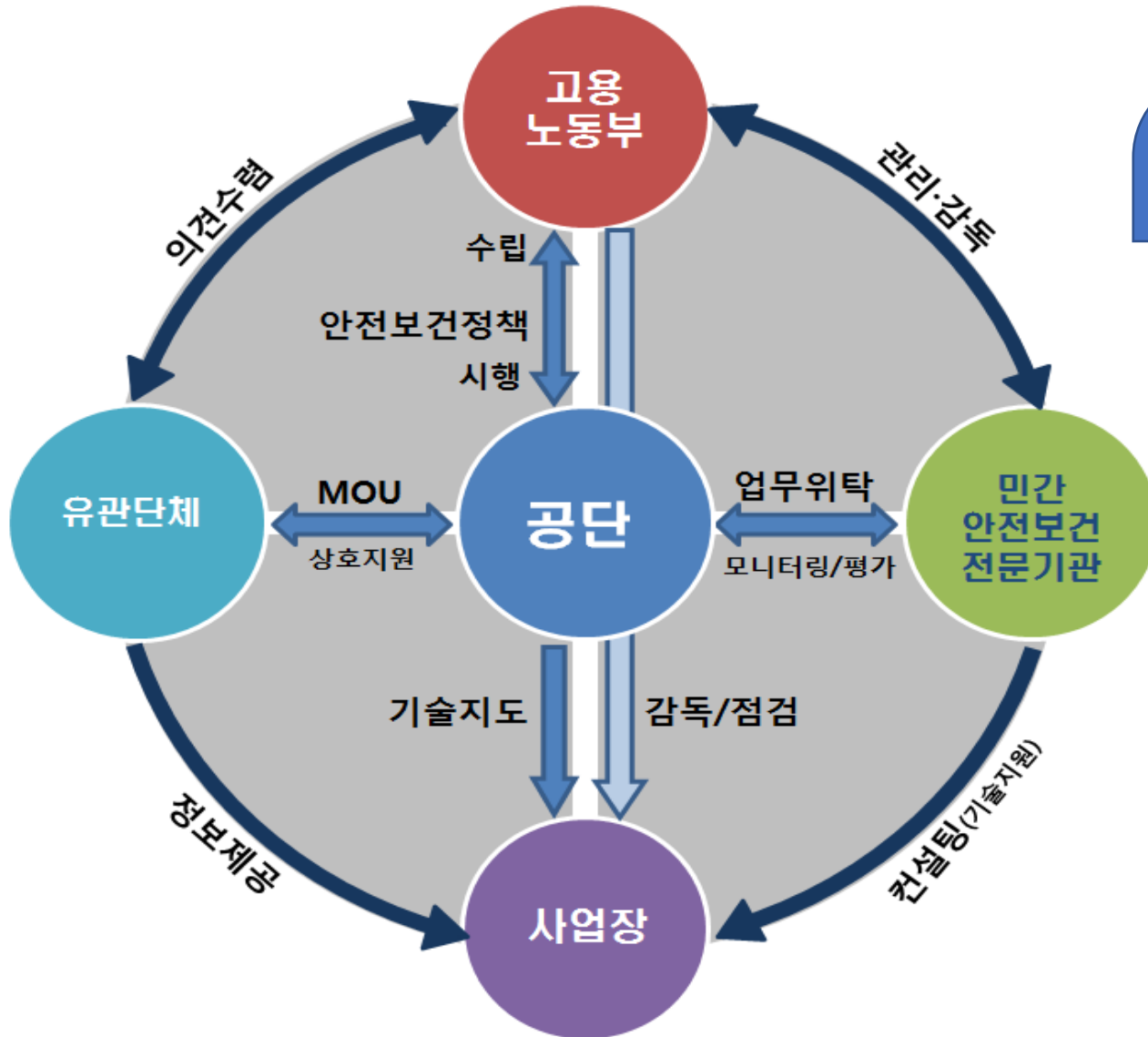
[관할지역] 5개 시, 5개 군



[관내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총 151,746 개소(전국 대비 4.63%)
 - 서비스업(101,786개, 67.1%)>건설업(23,459개, 15.5%)>제조업(14,467개, 9.5%)
- [노동자] 총 104만 명(전국 대비 4.52%)
 - 서비스업(63.6만명, 61.2%) > 제조업(14.6만명, 14.0%) > 건설업(12.0만명, 11.5%)

안전보건공단 역할



산업안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가교역할 수행

사망사고 감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 주요 사업소개

공단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01

법정사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인증 등
도급승인작업 안전
보건평가

02

재정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온열질환 예방사업

03

기술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체계구축 컨설팅
중상해 발생 사업장
신속 기술지원

04

재해조사 및 평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안전보건 평가

05

안전문화확산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콘텐츠
안전문화홍보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3조)

제조업 등

<제출대상>

- ① 사업의 종류(13개 제조업종)
- ② 유해위험설비(5개)

<제출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건물 착공일 또는 위험설비 설치(영업일 기준))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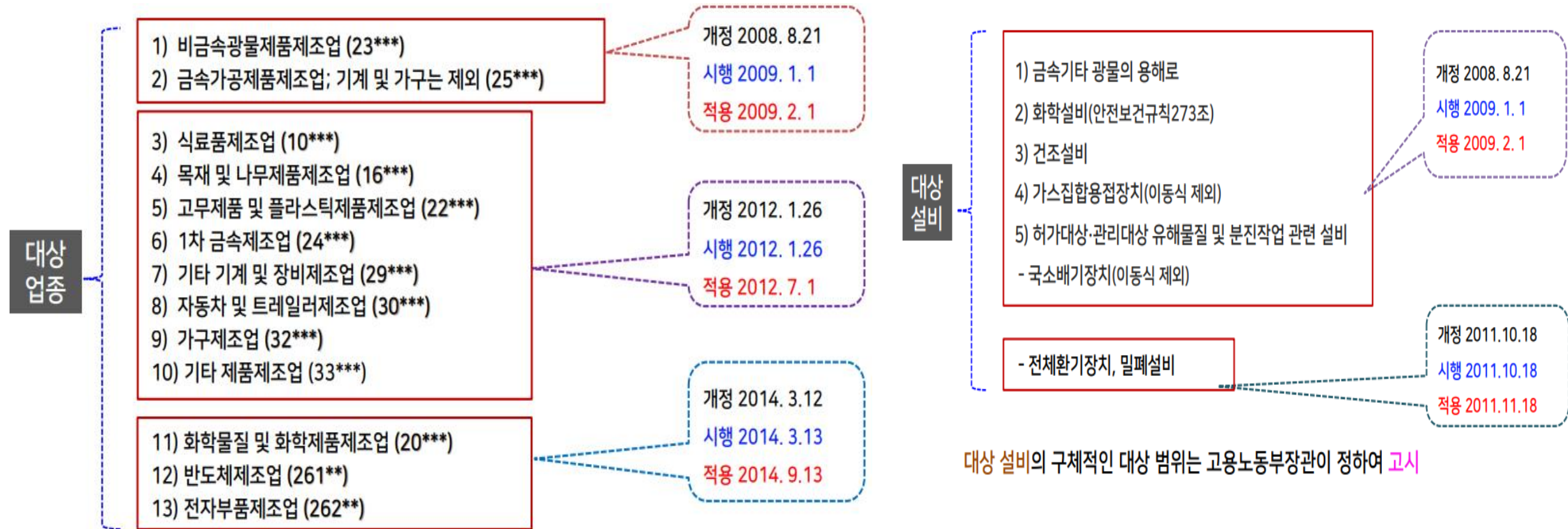
<제출대상>

- ① 높이 31m 이상 건축물 ②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공사 ③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④ 터널공사 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⑥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⑦ 연면적 5천㎡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

<제출시기> 착공 전(접수 후 심사결과까지 민원기한 최대 15일 소요(영업일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조업 등 : 사업의 종류(13개업종), 위험설비(5개))



대상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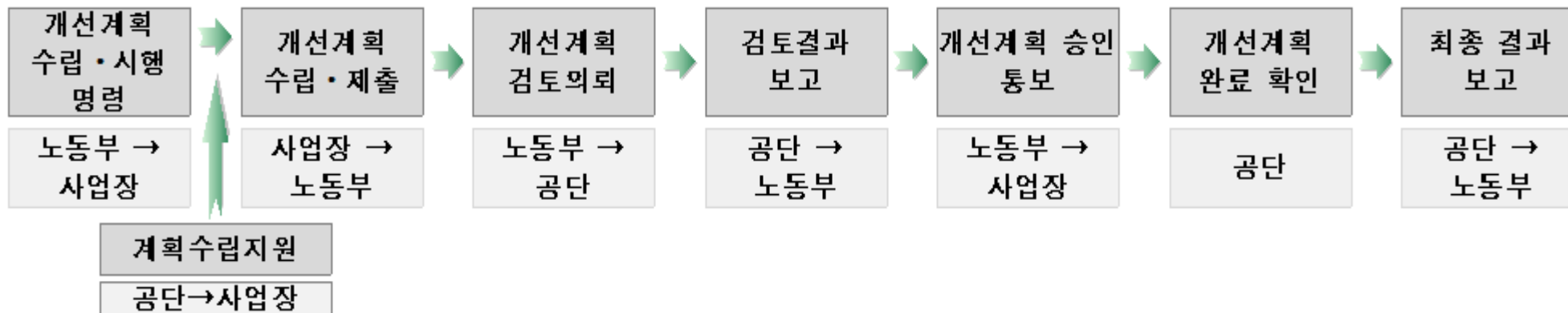
13개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개 위험설비의 적용시기는 법 시행시기에 따라 적용

② 안전보건개선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사업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3의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추진절차>



법정사업

③ 안전인증 등(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9조/제93조 등)

1. 안전인증

산안법 제84조

- 대 상: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절차: ((1) 안전인증(형식별) 서면심사(15일/30일*) -> 기술능력및생산체계심사(30일/45일) -> 제품심사(15일) (2) 안전인증(개별) 서면심사(15일/30일*) -> 제품심사(15일)

2. 안전검사

산안법 제93조

- 대 상: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소유주와 상이할 경우 소유주가 검사 주체)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 절차: 검사신청 -> 안전검사 실시 -> 합력증명서 발급(처리기간 : 30일)
- 검사기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3.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안법 제89조

- 대 상: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연삭기/ 연마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용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 절차: 신고서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필증 교부(처리기간 : 15일)
- 참고사항: 수수수수료 없음



법정사업

안전인증 표기

관련개념 안전인증제품 표시(예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인증필

(16-AV2CU-XXXX)

규 격: KOSHA-100

등 급: 방독마스크 직결식 반면형 겸용
(중농도 유기화합물·아황산용, 특급)

제조회사: 00센터

제조일자: 20××년 00월 00일



제2021 - 2149373 호

안 전 인 증 서

장명) 유진

대로 99(송도동)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품 목

고소작업대 기타 (국내품)

형식,모델(용량,등급)/인증번호

01

인 증 기 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41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인 증 조 건

이 제품에 한함

202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혼합기 파쇄기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6월 26일부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안전검사 대상

혼합기

수평형 혼합기



수직형 혼합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 주거나 섞어주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기류교반형 혼합기
3. 구동 모터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4. 산업용 혼합기의 내용적이 200리터 미만인 것
5. 식품용 혼합기 중 구동축이 수직형으로 사용되는 것
6. 밀폐식 투입 장치를 통하여 재료를 자동 공급·배출하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 것
7. 상·하 측면이 격벽으로 둘러싸인 구조
8. 상·하수 처리 설비 및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물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9. 가정용으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것
10. 압력용기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압력용기 안전성을 확인받은 것

※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

파쇄기·분쇄기

파쇄기(크리셔) 구조



동력으로 구동되는 절단 도구가 달린 회전 장치 또는 왕복운동 기구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을 부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시간당 파쇄·분쇄 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2. 구동 모터 용량이 7.5킬로와트 미만인 것
3. 회전 장치, 왕복운동 기구 없이 사용되는 것
4. 채소, 육류, 어류 등의 식품을 파쇄·분쇄 하는 것
5. 이동식 목재 파쇄·분쇄기, 차량탑재형 세단기
6. 밀폐식 투입 장치를 통하여 재료를 자동 공급·배출하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 것
7. 상·하 측면이 격벽으로 둘러싸인 구조
8. 가정용으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거나 사무용 문서 세단기로 사용되는 것
9.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받은 것

※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 ① 2013.3.1.이전 설치된 설비 2026.6.26.~2026.12.25.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 ② 2013.3.1.~2023.6.26.까지 설치된 설비 2026.6.26.~2027.6.25.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 ③ 2023.6.27.~2026.6.25.까지 설치된 설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대상 기계		수수료
혼합기	5kw 미만	44,000원
	20kw 미만	48,000원
	50kw 미만	51,000원
	50kw 이상	53,000원
파쇄기 및 분쇄기	5kw 미만	46,000원
	20kw 미만	53,000원
	50kw 미만	55,000원
	50kw 이상	63,000원

안전검사기관 및 홈페이지

기관명	홈페이지(문의처)
대한산업안전협회	http://www.safety.or.kr (02-851-6452)
한국안전기술협회	http://www.korsta.or.kr (1577-751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http://www.koelsa.or.kr (1566-127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portal.kosha.or.kr (1544-3089)

안전검사 업무처리 절차

안전검사 신청 사업주	안전검사 실시 검사기관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검사기관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도소개	혼합기와 파쇄기·분쇄기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과태료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 도급승인작업 안전보건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9조)

<도급승인 대상>

-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2항 및 제59조(도급의 승인) 제1항에 의한 작업을 도급하려는 사업장

도급승인 대상작업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2항에 의한

- ▶ 도급금지작업* 중 일시·간헐적작업과 전문기술력 및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

* ①도급작업, ②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제59조(도급의 승인) 제1항에 의한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단,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제외

* ①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 사진, ③pH meter “pH 5.8 ~ 8.6(중성)” 검증 자료[황산, 불산, 염산, 질산(액상)] 또는 가스검지기 “불검출” 측정결과(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가스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도급승인 기술사항 확인절차



공단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01

법정사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인증 등
도급승인작업 안전
보건평가

02

재정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온열질환 예방사업

03

기술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체계구축 컨설팅
중상해 발생 사업장
신속 기술지원

*

*

04

재해조사 및 평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안전보건 평가

05

안전문화확산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콘텐츠
안전문화홍보

재정지원사업

1. 안전일터 조성지원



①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 대 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소기업) 사업장
- 지원품목 및 한도: 지정품목(위험기계기구설비, 방호안전장치, 디자인 등), 자율신청품목 등 3,000만원 지원(공단 판단금액의 70%)

②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대 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소기업) 사업장
- 지원품목 및 한도: 지정품목(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37종), 자율신청품목 등 3,000만원 지원(공단 판단금액의 80%)

③ 소규모 특화

- 대 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지원품목 및 한도: 끼임 재해예방품목(15종), 부딪힘 재해예방품목(18종) 등 3,000만원 지원(공단 판단금액의 90%)

2. 안전동행 지원사업



- 대 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 사업장(뿌리공정 보유, 고위험 6대업종 및 상생 관련 등)
- 지원품목 및 한도: 물리·화학적 제조설비(폐기조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 설비 등 1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8,000만원 한도(공단40%, 원청10%)

3.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 대 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품목 및 한도: 위험기계기구 설치 및 교체, 방호조치, 재해예방시설 및 장비 등 15억원 한도(연리 1.5%(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

1. 안전일터 조성지원

①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 ▶ 목적: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감독·다발 고위험 작업·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

① 대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소기업) 사업장

② 지원품목

- 지정품목(위험·기계·기구설비, 방호·안전장치, 디자인 등),
- 자율신청품목

③ 지원한도(비율):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재정지원사업

1. 안전ilter 조성지원

①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 신청가능품목: 지정품목(33종) 및 자율신청품목

□ 위험기계·기구·설비(12종)

연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사진 (예시)
1	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	▶ 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연고일터, 연고일터벨터, NC제벨터, NC제벨터, 예터벨터, 예터벨터 등) ※ 고일종량, 축에 따른 차등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2	금형 교환장치	▶ 프레스,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QDC프레스용, QMC(사출성형기)용) 클램프 능력, 타입에 따른 차등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3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 취출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용) ▶ 호퍼로더 ▶ 호퍼로더는 원료 투입 높이 1M 이상인 경우 지원(취출로봇 통시 선정 조건)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4	천장크레인	▶ 천장크레인(3톤 미만) ▶ 안전인증제도 시행(2009.01.01.) 이전 제작·설치된 것으로 안전검사 불합격한 설비를 교체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5	고소작업대	▶ 고소작업대(안전인증)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6	소음방지시설	▶ 소음방지 원 일체설비 ▶ 저소음대체 자동화설비 ▶ 기준 설비 모터음량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7	식품가공용기계	▶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기계(자율안전확인신고용) ▶ 기준 설비 모터음량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8	전동지게차	▶ 전동 지게차(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탈) ▶ 공무지원 (관리용목별도공급)	
9	컨베이어	▶ 고정식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용)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 기준설비 모터음량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10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1	산업용리프트	▶ 산업용 리프트(전·후방) ▶ 고시 안전검사기준 산업용리프트(랙 및 피니언, 유압식)에 한함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12	K-사다리	▶ K-사다리(5마크 인증제) ▶ 공단과 산업디자인 허여계약을 체결한 제작사 제품에 한함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방호·안전장치(19종)

연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사진 (예시)
1	건설기계 안전장치	▶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인체감지장치, AVM 일체형) ▶ 굴착기 자동안전 쉼터(로더, 로더의 안전인용)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2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장치	▶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관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전·후방방지장치 등) ▶ 시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안전바, 안전봉)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3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 안전장식(안전인용) ▶ 일회성 일정지거 ▶ 양수조작식(안전인용) ▶ 재기동 방지장치 ▶ 작동식 프레스 클러치 개조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4	끼임방지시설	▶ 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등 ▶ 롤러기 안전장치(금형지·역회전장치, 울·안내로울러) ▶ 컨베이어 안전장치(덮개, 울, 연통장치, 비상정지장치) ▶ 각각 안전인용·검사 기준에 따름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5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 1세트(35개)·안전자물쇠(5), 하스프(5), 벨트잠금(3), 케이블잠금(2), 차단기 잠금(5), 전기클러크 잠금(5), 안전태그(10) → PSMD상사업장 : 벨트잠금 +5개 가능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6	크레인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용) ▶ 비상정지장치(컨트롤스위치 교체 등) ▶ 무선원격제어기(전·후방인용) ▶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록 ▶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고시 인증기준에 미충한 경우 3 미만 크레인 공산품에 한해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7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 소형 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선식) (경량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타워 기동기 있는 원격제어기 등) ▶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후방에 따른 인증제 품일 것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8	지게차 안전장치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경보를 발생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빌 등) ▶ 지게차 운전석 안전벨트(점멸장치 포함), 지게차 캐빈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9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용) ▶ 방호용 공사 ▶ 관과방지장치 ▶ 낙하방지장치 등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등	
10	산업용로봇 안전장치	▶ 방호울 ▶ 라이트커튼(안전인용) ▶ 안전매트(안전인용) ▶ 레이저 스캐너 ▶ 인더록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자동화장치 등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연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사진 (예시)
11	추락방지시설	▶ 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 안전난간, 안전방벽, 개구부 덮개, 이동식사다리(안전인용) ▶ 추락 안전매트 등 기타 추락방지 시설 ▶ 계단 안전 덮개 ▶ 안전블록 세트(안전인용) ▶ 안전블록은 인형일 기준 전·후 또는 양면으로 지붕공사 실적용, 안전그레일(안전대+안전블록)으로 총폭당 1인만 한 이내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2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	▶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레이크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3	화재예방 예방설비	▶ 환기팬 (일회성 방화벽, 제트제거 구동) ▶ 마른모래 ▶ 덕트 ▶ 용접방화포 ▶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배출) ▶ 비상경보장치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고압식, 이온식) ▶ 비상조명등 ▶ 비상대피 유도선 (경보) ▶ ABC분말 소화기 ▶ 비상대피 유도등 ▶ 이동식 포화설비 ▶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고압식 이온식) ▶ 압입설비 ▶ 방폭 전기기계·기구 (KCo방폭인용) ▶ 소화약제 ▶ 건축물 내화 도장공사(전·후방)에 한함 ▶ 방화장식 등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14	질식재해 예방설비	▶ 호흡용 보호구 (승기마스크, 공기호흡기 → 안전인용) ▶ 가스측정장비 (산소,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 환기설비 (환기팬, 환기덕트) ▶ 긴급구조설비 (구조용사다리, 구명로프, 구조용상각대세트 등) ▶ 질식재해 예방 대체설비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5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최소 10개 이상)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6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장치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7	선형안전난간	▶ 호환형 단간기동, 단간 수평제 (OK 타입 전용) ▶ 호환형 단간기동, 단간 수평제 (OK 타입 전용)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8	고령노동자 친화 작업환경 개선설비	▶ 경량 운반대차 ▶ 시정각(이동) 경보기 ▶ 산업용 안전매트 ▶ 문턱 제거(미끄럼 방지 조치)공사 ▶ 충돌재해 예방설비 ▶ 조명공사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19	별목적업 보호구 및 장비임대료	▶ 산원작업용 안전모 ▶ 통발매일방지 바지 ▶ 임업장비 임대료 ※ 표준가격(기준가격) 및 실거래 세금계산서 따라 결정	

□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2종)

연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사진 (예시)	비고
1	애플리케이션	▶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 재해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심의결과에서 확정한 제안등록에 한함 ▶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지원등록업체 정보안내서」 확인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2	산업안전 디자인	▶ 산업안전 디자인(디자인과 관련한 도록물, 표지, 도판, 배너, 고보조명, 개인 보호구 등 포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된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중 시각 또는 환경디자인이 포함된 종합디자인업체에서 건설업을 받는 경우에 한함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1. 안전일터 조성지원

②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 목적: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① 대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소기업) 사업장

② 지원품목

- 지정품목(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37종)
- 자율신청품목

③ 지원한도(비율):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80%)

재정지원사업

1. 안전일터 조성지원

②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신청가능품목: 지정·관리품목(37종) 및 자율신청품목

구 분	취급품목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안 전 (30종)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 고정식 : 관리품목		고정식 꺼임·충돌 위험구역		이동식 꺼임·충돌 위험구역(건설업 본사)		ILO형 고위험기계설비		인공지능형 고위험기계설비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7종)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3종)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관리품목												
보 건 (7종)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근력보조슈트												
	유해물질 통하안전관리시스템(2종)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자 율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자율신청품목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천장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음선: 흔들림 방지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비접촉 과속방지장치)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 조끼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		천장주행크레인		고소작업대		이륜차(배달, 택배업 등)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전도방지장치		충돌방지장치(카메라 센서형)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자동차 및 정지장치		충돌방지장치(무작형)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시스템		붕괴변위위험 경보시스템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꺼임 위험설비		가시질·구조물(건설업 본사)		추락 위험장소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인화성 가스 감지기(고형식/이동식)		인공지능(AI) 화재감지기		인공지능(AI) 계측장치 화재·폭발·누출 위험장소		화학물질 누액감지장치		방폭정전기 축전기(음선)		스마트 피난유도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전력악성 감지장치 전 업종		아크제거장치 수배전반 보유 건설업 본사		이동식 누설전류류통제장치 건설업 본사		귀마개 소음작업(85dB 이상)		방진마스크 분진작업		호흡 장치 사용 조영

재정지원사업

1. 안전일터 조성지원

③ 소규모 특화

- ▶ 목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부딪힘**' 사고사망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설비 비용 지원

- ① 대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② 지원품목: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 ③ 지원한도(비율):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90%)

재정지원사업

1. 안전일터 조성지원

③ 소규모 특화

▶ 신청가능품목: 끼임 관련 품목(15종) 및 부딪힘 관련 품목(18종)

□ 끼임 산재예방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15종) □ 부딪힘 산재예방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18종)

연번	품목명	세부내용	사진 (예시)	연번	품목명	세부내용
1	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	▶ 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업코일러, 업코일레벨러, NC레벨러피더, NC롤피더, 에어피더, 레벨러 등)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ILO형)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참조(항부2)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지원
2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 광전자식(안전인종품) ▶ 일행정 일정지시기 ▶ 양수조작식(안전인종품) ▶ 재기동 방지장치 ▶ 확충식 프레스 클러치 개조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인공지능형)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참조(항부2)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지원
3	금형 교환장치	▶ 프레스,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 Q.D.C(프레스), Q.M.C(사출성형기) → 금형교환 능력, 타입에 따른 차등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3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참조(항부2)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지원
4	식품가공용기계	▶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기계(자율안전확인신고품) ※ 기존 설비 모터출력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4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참조(항부2)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지원
5	컨베이어	▶ 고정식 컨베이어(자율안전확인신고품)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 기존설비 모터출력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5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충돌방지장치)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참조(항부2)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지원
6	산업용 리프트	▶ 산업용 리프트 (연속교체) ※ 고시 안전검사기준 산업용리프트(예, 및 피니언, 유압식)에 한함 ※ 공사원가계산서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충돌방지장치(카메라 센서형))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참조(항부2)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지원
7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종품) ▶ 방호용 공사 ▶ 권과방지장치 ▶ 낙하방지장치 등 ※ 공사원가계산서		7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참조(항부2)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지원
8	끼임방지 시설	▶ 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등 ▶ 롤러기 안전장치 (슬링지, 역회전장치, 물안내롤러) ▶ 컨베이어 안전장치 (덮개, 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 각각 안전인증 검사 기준에 따른 ※ 공사원가계산서		8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참조(항부2)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지원
9	산업용로봇 안전장치(끼임)	▶ 방호울 ▶ 라이트커튼(안전인종품) ▶ 안전매트(안전인종품) ▶ 레이저 스캐너 ▶ 인터록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가동허가장치 등 ※ 공사원가계산서		9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참조(항부2)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지원
10	전단기 및 절곡기	▶ 전단기 및 절곡기(안전인종품) ※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종에 불합격한 설비를 교체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종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사용종인 모터출력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10	차량탈출제고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참조(항부2)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지원
11	롤러기	▶ 롤러기(안전인종품) ※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종에 불합격한 설비를 교체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종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사용종인 모터출력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11	이상장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참조(항부2) ※ 해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지원
12	연삭기 또는 연마기	▶ 연삭기 또는 연마기(자율안전확인신고품)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받는 조건으로 지원 ※ 사용종인 모터출력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12	건설기계 안전장치	▶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안전감지장), AVM 일체형 ▶ 굴착기 자동안전 쉼터롤러(국...내의 안전인종품)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3	파쇄기 또는 분쇄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자율안전확인신고품)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받는 조건으로 지원 ※ 사용종인 모터출력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13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장치	▶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원거리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전동방지장치 등) ▶ 시지형 고소작업대 과속상 방지장치(안전바, 안전봉)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4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자율안전확인신고품) ※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받는 조건으로 지원 ※ 사용종인 모터출력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14	크레인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종품) ▶ 비상정지장치(엔드스위치, 교체 등) ▶ 무선원격제어기(원거리방지) ▶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등 ※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는 고시 인증기준에 미충한 경우, 각 미한 크레인 권승용에 의해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5	폐지-플라스틱 압축기	▶ 폐지-플라스틱 압축기 ※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라 강력한 설비 및 안전 인증을 통해 지원 ※ 사용종인 모터출력의 150% 범위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15	소형 타워 안전장치	▶ 소형 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인식) (정리하중 경고, 회전제한, 풍속에, 영상장치, 모...터릴 기능이 있는 원격제어기 등) ※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품일 것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6	산업용로봇 안전장치(부딪힘)	▶ 안전매트(안전인종품) ▶ 레이저 스캐너 ▶ 인터록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가동허가장치 등 ※ 공사원가계산서
				17	지게차 안전장치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경보음 발생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트 등) ▶ 지게차 운전석 안전벨트(연동장치 포함), 지게차 캐빈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8	화물자동차 충돌예방장치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2. 안전동행 지원사업

- ▶ 목 적: 50인 미만 또는 중·소사업장에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대상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보유, 고위험 6대업종, 상생협약 체결,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사업장	원청 직접, 상생관련기금 연계,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 지원
지원품목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 제조 설비(폐기조건),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지급한도(비율)	<u>1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u>	<u>8,000만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40%)</u> <u>2,000만원(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u>

2. 안전동행 지원사업

- ▶ 신청가능품목: 기존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기계·기구 도입
- 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센터 등),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기존 설비 폐기조건)**
 - 위험물 전용보관함, 공장동을 포함한 사업장 내 화재발생 감지설비 및 화재경보설비
 - 보행환경,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디자인 및 작업환경 개선

프레스



공작기계



크레인



사출성형기



재정지원사업

3.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 ▶ 목적: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 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①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② 지원품목

- 위험·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방호조치
-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장비

③ 지원한도(비율): 15억원 한도(연리 1.5%(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

3.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주요지원설비

-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프레스, 공작기계(CNC 머시닝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시설·장비 및 공정·환경개선 설비
-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프레스



공작기계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4-1. 온열질환 예방설비

▶ 목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설치 비용 지원

①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②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제빙기, 임대비용 등

③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2,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품목명	지원기준		비고
	건설업 본사	그 외 업종	
이동식 에어컨 	■ 지원대수 - 옥외작업 현황을 확인하여 사업장(건설현장) 당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각각 1~3대* 내외로 지원 * 작업여건에 따라 5대까지 지원(공단 확인 후 판단) ■ 이동식 에어컨은 '20~'25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최대5대, 사업장 기준) - 예) 기존에 3대 지원받은 사업장은 2대까지 지원 가능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시류기술지도 1~3년 • 사무실 냉방용도 지원 불가
산업용 선풍기 	■ 산업용 선풍기 단독 신청 불가 - 이동식 에어컨 신청시에만 함께 신청 가능 ■ 상사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초과 지원 불가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시류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그늘막 	-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 지도 (손망실·도난 방지)	지원 불가 ※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안으로 임의설치 불가	• 시류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제빙기 	■ 폭염취약업종에 한하여 지원 ■ 현장 규모,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지원 - 건설업 본사 최대 3대(단, 3대 합산 제빙능력 300kg 이하, 물통형에 한함) - 그 외 업종 ① 30인 미만 1대(제빙능력 100kg 이하), ② 30인 이상 최대 2대(단, 2대 합산 제빙능력 200kg 이하)		• 시류기술지도 1~3년 • 근로자 작업장소 또는 휴게시설 설치조건에 한정하며, 고객지원용 설치 등 지원불가

4.2.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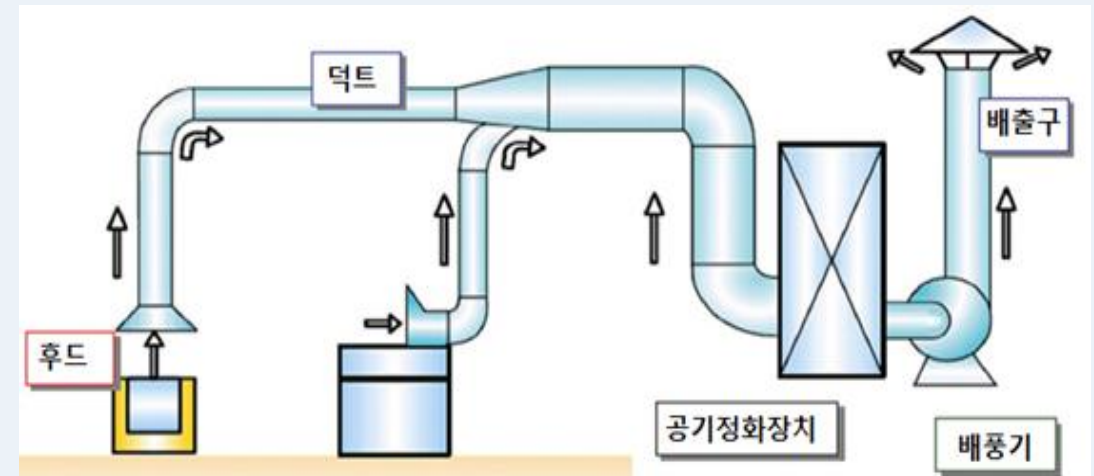
▶ 목적: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

① 대상: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조리부산물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② 지원품목

-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임대비용 등

③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5,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① 「건강 디딤돌」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4-3.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 ▶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 조성

지원대상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1]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3]
	공동주택 ^[4] 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1]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2]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뜻하며,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시설·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의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작업환경측정 신규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작업환경측정	신규 측정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 전액지원(최대 100만원)
	기존 측정	측정비용의 80% 지원(최대 40만원)
	※ 신규 측정 사업장 : 과거 3년 동안(2023년 이후) 측정 미 실시 사업장	

※ 측정비용 : 공단 산정금액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른 제1, 2차 검사 항목에 대하여 비용지원

특수건강진단	3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지원
	30인 ~ 5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90% 지원
	공동주택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90% 지원
	건설일용직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	• 50억 미만 :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지원 • 50억~800억 미만 :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70% 지원 • 800억 이상 :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60% 지원

공단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01

법정사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인증 등
도급승인작업 안전
보건평가

02

재정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온열질환 예방사업

03

기술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체계구축 컨설팅
중상해 발생 사업장
신속 기술지원

*

*

04

재해조사 및 평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안전보건 평가

05

안전문화확산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콘텐츠
안전문화홍보



제조업 등(안전분야)

구분	기술지원 사업 개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컨설팅) 전업종(건설업 제외),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인정) 전업종(건설업 제외),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요건에 충족한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서" 발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보건/건설업도 해당	(대상) 상시근로자 수 5-49인 중심의 제조업 등 사업장, ※ 50인 ~ 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민간전문기관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중상해 발생 사업장 신속 기술지원 *건설업도 해당	(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상해 재해 발생사업장(제조업, 기타의 사업 중심) 대상선정 ➡ 사업안내 ➡ 기술지원 (필요시 재정지원 연계) ➡ 개선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공정 설비 개선 등) ➡ 개선결과 확인 ➡ 개선 노동부 보고 ➡ 종결	

위험성 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KRAS로 쉽고 간편하게 하세요



☞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 무엇인가요?

Korea Risk Assessment System의 약자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평가·개선하는 등 인터넷 기반으로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1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접속하여 사업자 인증(사업장 공동인증서 필요)

2 KRAS(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하기

3 위험성평가 등록 및 실시하기 -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 등 위험성평가 등록

4 위험성평가 완료 - 위험성평가 절차의 모든 단계를 입력 및 저장후 완료하기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의 자세한 사용법은 동영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 어떻게 활용하나요?

- 첫째** 위험성평가를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모바일 기기로 근로자가 현장에서 발굴한 위험요인을 간편하게 등록하고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과 비교하여 우리 사업장의 수준을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넷째** 다양한 자료(실무 지원 영상, 서식 등)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요구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 위험성평가 POINT!

▶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 찾아낸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를 공유!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공유 및 기록·보존

위험성평가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합니다.
사업주·관리감독자·현장근로자·협력업체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 냅니다.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합니다.

위험은 모두와 공유합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행일: 2026. 6. 1.



2026년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

개정된 법안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내어, 이를 개선해 나가는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

위험성평가 핵심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단계마다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을 개선하는 일상적인 활동이 곧 위험성평가입니다.



01 | 실시 의무 강화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 크기를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02 |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03 | 근로자대표 참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04 | 공유 및 주지

평가 결과를 교육, 게시판, 서면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05 | 기록·보존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법률	위반 내용	과태료 부과액
제36조제1항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최대 1,000만원
제36조제2항 및 3항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제36조제4항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제36조제5항	기록·보존 의무 위반	최대 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01 | 실시 의무 강화 제36조 제1항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02 | 근로자 참여 제36조 제2항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03 | 근로자대표 참여 제36조 제3항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04 | 공유 및 주지 제36조 제4항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05 | 기록·보존 제36조 제5항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조업 등(안전분야)

구분	기술지원 사업 개요							
지역특성화 사업	(대상) 대전세종권역 내 산재발생 현황, 산업특성 등을 고려한 산재취약분야 대응 강화							
	지역 사고사망 다발 업종, 직종, 작업, 노동부/유관기관 등 점검 요청사업장 등 점검 지원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활동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산업재해 예방							
	<table><tr><td>구분</td><td>사내 협력업체</td><td>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td></tr><tr><td>매칭 분담 비율</td><td>모기업50 : 정부최대50</td><td>모기업30 : 정부최대70</td></tr></table> *컨설팅/안전보건활동과제			구분	사내 협력업체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매칭 분담 비율	모기업50 : 정부최대50
구분	사내 협력업체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매칭 분담 비율	모기업50 : 정부최대50	모기업30 : 정부최대70						
소규모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대상) 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제조업 등 사업장 ※ 50인 미만 제조업 등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평가 기반 기술지원 실시, 지원사업장의 사고·질병재해 예방 기여 (안전중점) 최대 3회 지원, (서비스업) 건물관리업, 도소매업(사업장 당 2회 지원), 음식업(1회 방문)							
안전한 일터 지킴이	(대상)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							
	3대 다발 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의 현장 패트롤 점검							

제조업 등(보건분야)

구분	기술지원 사업 개요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위탁수행)	(대상) 50인 미만 근골격계질환 취약 직종 및 근골격계질환 다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지도 등으로 유해요인 파악 및 개선 컨설팅 실시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원	(대상) 질식재해 고위험업종 및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 처리시설, 축산분뇨 처리시설, 양돈농가 등 고위험장소 기술지원 ※ 원콜 서비스 지원 포함	
산업보건 고위험 종합관리	(대상) 산업보건 유해위험요인 보유, 제도이행, 작업환경 불량, 사회적 이슈 발생 사업장 등	
	산업보건 위험성평가(OHRA)와 지역특성, 여건 등을 고려한 고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과 지원을 통해 급성중독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 직업병 발생 유해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	
취약노동자 건강보호	① 계절별 기후변화 노동자 보호	폭염.한파 및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취약 사업장
	②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콜센터, 돌봄, 백화점, 마트, 병원 등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③ 산업보건 현안 적시대응	일터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보건 적시 대응
	④ 야간작업 노동자 과로사 예방 종합지원	과로사 발생 고위험군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 보호

기술지원 사업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One-Call 서비스

밀폐공간, 한번의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 **1644-8595** 로 연락주시거나
QR코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원콜(One-Call)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밀폐공간 : 반드시 사방이 막힌 공간이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그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



원콜(One-Call) 서비스란?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안전교육, ③ 장비대여, ④ 기술지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질식사고 예방 종합서비스

종합서비스 내용

가스농도 측정



안전 교육



장비 대여



① 가스측정기 ② 환기팬 ③ 송기마스크

신청방법 및 절차



전화(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사업장



접수

안전보건공단 [원콜(One-Call) 서비스 수행기관]



현장서비스
- 가스농도 측정
- 안전교육
- 장비대여
- 기술지도



장비회수

※ 밀폐공간작업 3일전까지 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설치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분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건강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운영인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심리상담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요금

전액 무료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합니다.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저녁 9시)
 ※ 센터별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사전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대표번호 : 1577-6497
 ※ 센터별 소재지 및 연락처는 뒷면 참조

총청권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1층)	042-936-9571
	충북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 5층)	043-218-9415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VJ빌딩 2층)	041-522-8993






소규모 사업장 건강지킴이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건설업



구분	기술지원 사업 개요	
패트롤 현장 점검	(대상)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불시점검(Patrol) 점검 ※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특성을 고려한 고위험요인 중심으로 불시 점검	
	사망사고 다발 12대 기인물 ①단부개구부, ②철골, ③지붕, ④비계·작업발판, ⑤사다리, ⑥달비계, ⑦이동식비계, ⑧거푸집 및 동바리, ⑨굴착기, ⑩고소작업대, ⑪트럭류, ⑫이동식크레인	
소규모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대상)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 ※ 산재미가입 사업장 포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을 통한 지붕 개보수(태양광 설치), 외부도장 작업 집중 발굴 및 적기 기술지원	
안전한 일터 지킴이	(대상) 지붕공사 관련 추락 재해 예방,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	
	추락 등 위험요인 근절 순찰 불량현장 현장 순찰 관내 지역특화 순찰 _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현장 모니터링	

공단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01

법정사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인증 등
도급승인작업 안전
보건평가

02

재정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온열질환 예방사업

03

기술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체계구축 컨설팅
중상해 발생 사업장
신속 기술지원

*
*

04

재해조사 및 평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안전보건 평가

05

안전문화확산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콘텐츠
안전문화홍보

중대재해 원인조사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재해조사 지원 요청*에 의해 원인규명이 필요한 **사고의 원인조사**를 통한 **동종·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제시** 및 사고조사 전문가 양성

* 조사대상: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원 요청한 재해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및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28조

사회적 이슈사고 기획조사

사고감시 및 대응


안전보건공단


kakao

알림톡 도착

[무상해-상황전파 1보] 구급
- 발생일시 :
- 사업장명 : 파악불가(공장)
- 사고위치 :
- 사고내용 : 공장 내 화재 발생(자체 진화 중, 인명 피해 여부 파악 불가, 2층 공장)
- 기타사항 :
- 피해현황 :
- 기상 : 기온: 3.3℃ 강수: 0.0mm 풍속: 2.9m/s 습도: 47.8%

오후 1:39

안전보건 평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안전관리등급 심사

민간기관(안전/보건/건설 및 교육지정 기관 등) 평가

4개 센터 운영
(충청권 평가센터)

공공기관 : 재경부 법률 및 지침에 의거 지정. 심사 또는 노동부 고시에 의거 평가

- 공공기관 지정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정)
-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재경부)
- 안전활동 수준평가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노동부)

지방공기업 : 노동안전 종합대책(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도입. 확대)

민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지정 및 평가

공단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01

법정사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인증 등
도급승인작업 안전
보건평가

02

재정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온열질환 예방사업

03

기술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체계구축 컨설팅
중상해 발생 사업장
신속 기술지원

*
*

04

재해조사 및 평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안전보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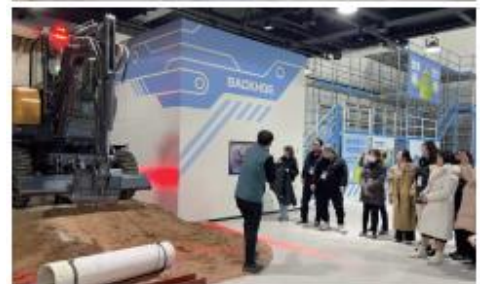
05

안전문화확산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콘텐츠
안전문화홍보

안전보건교육

구분	기술지원 사업 개요	
안전보건 중점교육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 위험성평가 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산재공표 대상 사업자 교육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
안전보건 체험교육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실습교육 지원	
	(체험교육장) 여수/익산/담양/제천/인천체험교육장	
안전보건 양성교육	사업장 안전보건에 필요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안전보건 양성교육	사업장 안전보건에 필요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다양한 계층.업종별 맞춤형 인터넷 원격교육 지원	
	▽ 직무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직무교육	



안전보건콘텐츠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업종·직종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보급

위험요인 및 대상별 안전보건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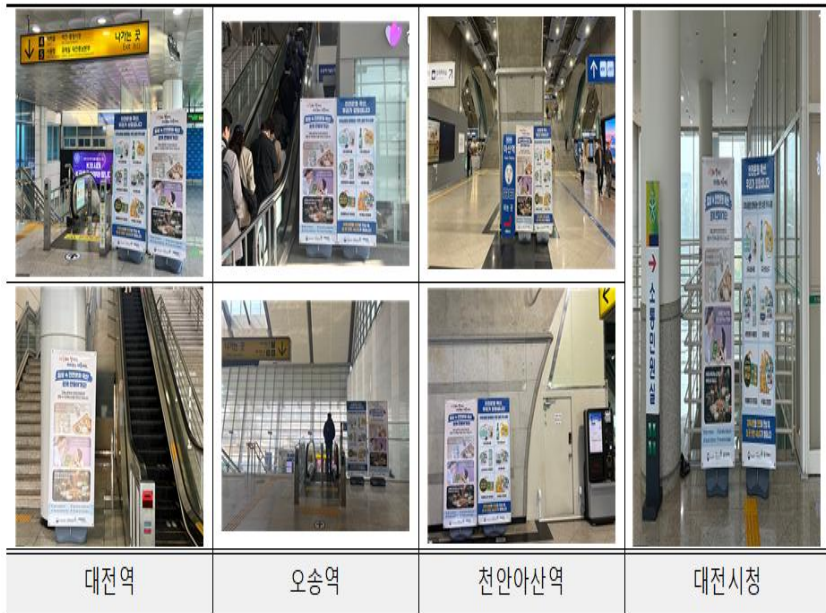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온·오프라인 보급

(홈페이지, 앱, 메일링 서비스 및 현장배송 등)



안전문화 홍보



대전역 · 오송역 등 4개 KTX역사,
시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안전 메시지 전파 활동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 함께 만들어가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생활 속 안전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탁 위 우유와 김에도
안전메시지가 함께합니다.



아이들의 간식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안전문화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안전을 잊지 않습니다.



- ☑ 생활 속 안전메시지
- ☑ 일상 밀착형 산업재해 예방
- ☑ 기업 협업 안전문화 확산
- ☑ 지역사회 연계 안전캠페인



안전문화 확산, 우리가 앞장섭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우수사례



지역사회와 안전이 만날 때,
더 큰 안전 시너지가 열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 밀접한 곳에서 공단 · 고용부 · 기업이 안전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유도

안전문화 진단-실천-확산으로 완성됩니다

01 [진단] 현재 수준과 개선 우선순위를 찾습니다

KSCI 기반 진단과 필요 시 안전의식 향상·안전심리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결과를 해석하여 취약요인과 사업장별 우선 개선과제를 제시합니다.

02 [실천] 진단 결과를 현장의 행동으로 바꿉니다

매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에 노·사 합동점검, 캠페인, TBM 연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폭염·한파 등 시기별 이슈와 업종·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을 집중 확산합니다.

03 [확산] 우수한 실천을 지역의 안전문화로 넓힙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지역포럼을 통해 경제단체·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활동합니다.

언론·전광판·SNS·회원사 매체로 핵심수칙과 우수사례를 반복 전파합니다.



경제단체가 연결하면 공단의 지원이 회원사 현장까지 닿습니다

협력방식 대상 기업·업종 추천 / 공동 캠페인·포럼 / 우수사례 발굴·확산

공단 제공 진단도구·전문가·콘텐츠·기획 **경제단체 역할** 참여기업 발굴·회원사 소통·지역 확산



감사합니다